「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 1. 제안이유

「평창군 건축 조례」 제18조 도로의 지정에서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며,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의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기존 3가지 경우 외 제4호부터 7호까지를 추가 신설(안 제18조제1항)

나.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의 건축심의 요청에 따른 필요서류 규정(안 제18조제2항)

##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 건축 조례」에 도로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군수)는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를 공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로 지정 시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군수)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며

| |
|---|
| **제18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공유지<br>2. 확·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공유지<br>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

개정 조례안에서는 18조 본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아래와 같이 4개 호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경우
7.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또는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둘째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제1항과 관련한 사항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건축법」상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았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참고자료(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